

심사대상 : 작업장, 시설물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재정경제부

심사위원

성명	서명	안전 역량	안전수준				안전 성과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김 진 호	김진호	○	○				○
박 지 영	박지영	○	○				○
박 종 용	박종용				○		
임 형 철	임형철				○		

본 심사의 주된 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안전평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기관 현황

기 관 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기 관 장 (‘25년말 기준)				이우영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설립목적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주요역할	○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한 기능대학 설립·운영 지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매체·과정의 개발 및 이러닝(e-learning) 등 원격훈련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											
기관유형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심사유형	Ⅱ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60%		비해당		40%		비해당	
안전관리 등급	‘25년도				‘24년도				‘23년도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3	4	4	1	-	-	-	-	-	-	-	-

II 총 평

- ‘25년 기관의 종합 등급은 3등급으로 심사되었다. 다만,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범주의 등급이 4등급 수준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역량)** 4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체계역량’ 분야의 ‘안전보건경영 투자’와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지표에서 가장 낮은 득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리역량’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C등급)’를 제외하고 모두 D등급으로 심사되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수준)** 4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작업장’ 분야의 4개 지표 모두 D등급으로 심사되어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성과)** 1등급으로, 사고사망자 발생이 없었다. 특히, 기관의 현장을 방문한 결과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른 현장의 안전활동 전파가 우수하고 적극적인 안전문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기관의 안전보건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범주별 개선 필요사항

○ 안전역량

개선 필요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의 관리 체계 강화
2. ESG안전센터에 대하여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업무분장 명문화
3. ESG안전센터가 안전보건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제도 도입
4. ESG안전센터가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에 적극 관여하는 프로세스 도입
5. 법규 검토 절차 마련 및 검토과정 강화
6.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지침」을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지침서로 고도화
7.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따른 13개 추진과제의 실효성과 현장작동성 향상 노력
8. 수시 위험성평가 진행 과정에서 정의하는 평가 대상의 명확화
9. 지역본부의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 철저
10.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 활동 강화
11.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 중 위험군 분류·관리 활동 보완 필요
12.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목표 수료율 선정 및 내부 평가 연계 강화
13. 「안전보건교육지침」에 따른 법정 직무교육 수료 현황 관리 강화
14. 기관 내 비상 대응 훈련 참여 인원 확대
15. 최신화된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지침'을 지역본부에 교육 및 전파하여 공유
16. 전사적 혼재작업 현황 파악 및 관리 철저
17.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 안전수준

개선 필요사항

[작업장]

1. 작업장의 기본 안전보건조치가 관련법령 요구수준으로 관리·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방안 마련
2. 현장 근로자에 대한 LOTO 작업절차서 교육 필요
3. 현장 내 기계·기구 및 충전부 등 안전보건조치 및 동종 사례 재발 방지
4. 소방훈련·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추가 훈련·교육 실시
5. 정화조 등 밀폐공간 작업구역 출입금지 표지 및 작업허가 게시판 설치

개선 필요사항

- | |
|--------------------------------|
| 6. 소화기 작동여부 및 도시가스 폭발위험 관리 강화 |
| 7. 작업허가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이행 점검 강화 |
| 8. 작업 중 안전보건조치 준수여부 점검 절차 명문화 |

[시설물]

- | |
|--|
| 9.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 필요 |
| 10. 모의훈련 개선점 파악을 통한 향후 계획 반영 필요 |
| 11.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검증체계 규정화 필요 |
| 12. 기관의 소관 시설물별 노후화 기준 마련 |
| 13. 보수·보강 이력관리의 구체적인 규정(이력관리 대상 용역, 기준, 방법, 주체, 기한, 이행점검 및 미적정 관리에 대한 조치 등) 마련 |
| 14. 시설물 보수·보강 이력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15.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개선 필요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과정 및 제도개선 노력 필요 |
| 16. 전문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 필요 |

○ 안전성과

개선 필요사항

해당없음

IV 심사 결과

구 분		등급
종합등급 (1,000점)		3
① 안전역량 (300점)		4
② 안전수준 (350점)		4
위험요소별 등급	작업장	D
	건설현장	비해당
	시설물	D
	연구시설	비해당
③ 안전성과 (350점)		1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역량 [300점]	① 안전역량 배점 및 등급		300	4
	1. 체계 역량	소 계	140	C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30	C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C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D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20	D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20	C
	2. 관리 역량	소 계	160	D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30	D
		②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20	D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20	C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20	D
		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70	D
안전수준 [350점]	② 안전수준 배점 및 등급(분야별 가중치 적용)		350	4
	1. 작 업 장	【작업장 안전관리】	350	D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60	D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20	D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90	D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80	D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수준 [350점]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2. 건설 현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350	비해당
		①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체계	20	비해당
		② 건설공사의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	50	비해당
		③ 건설공사의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	80	비해당
		④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25	비해당
		⑤ 건설안전 환경 조성	70	비해당
		⑥ 안전시공 작동 수준	105	비해당
	3. 시설물	【시설물 안전관리】	350	D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20	B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20	C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40	A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	90	D
		⑤ 시설물 사고 및 안전성능 수준	30	A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40	E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40	E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70	D
	4. 연구 시설	【연구시설 안전관리】	350	비해당
		①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조성	50	비해당
		② 연구실 연구장비 위험방지	40	비해당
		③ 연구실 전기설비 위험방지	40	비해당
		④ 연구실 시약류 취급 및 보관	50	비해당
		⑤ 연구실 화재 예방	40	비해당
		⑥ 연구실 고압가스 취급 및 보관	50	비해당
		⑦ 연구실 연구환경 및 연구자 보호	40	비해당
		⑧ 연구실 생물체(LMO) 감염 예방	40	비해당
안전성과 [350점]	③ 안전성과 배점 및 등급		350	1
	공통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60	결측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00	B
		③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40	A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50	A

※ 등급부여 기준 (100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구 분	총 점	1등급(A)	2등급(B)	3등급(C)	4등급(D)	5등급(E)
배 점	100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1 「안전역량」 범주 심사

1. 체계역량
2. 관리역량

1. 체계역량

【1】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공유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기관’ 이라 한다)은 ‘인적자원개발(HRD)을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미션 아래,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K-HRD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의 수요를 표준화하고, 이를 평생능력개발 사업에 투영하여 일학습병행 및 중소기업 훈련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자격시험 브랜드인 Q-Net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을 엄격하게 관리·운영함으로써 인력 수급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숙련기술진흥 사업을 통해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명장 육성으로 기술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나아가 외국인고용지원(EPS)과 해외취업지원(월드잡플러스)을 통해 국내외 인적 자원의 이동과 교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관의 최고경영자(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는 동아일보 및 매일노동뉴스 등의 기고문을 통하여 ‘안전이 최우선’이며, 안전관리의 책임은 기관에 있음으로 무엇보다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관장은 기관의 안전보건수준 발전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하여 입상 부서에 대한 가점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기관 내 우수한 안전보건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련 자원 배분 확대 및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안전업무 인력 확대 및 조직 편제 조정을 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에 따라 평가체계 전반에서 ‘안전’ 관련 항목의 비중과 관리의 중요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관장 리더십 범주내 ‘안전경영 노력과 성과’를 신설하고 안전분야 가중치를 모두 상향조정한 점은 기관장의 안전경영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관장은 ’23년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한다)

의결을 통하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였다. 이후 '25년 CEO 경영방침 수정 및 수립을 위하여 경영방침 실천키워드 공모전, 국민이 생각하는 HRDK 가치체계 관련 대국민 설문 진행, 임직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통하여 CEO 경영방침을 재정비하였다. 다만,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대한 검토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전략목표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연간 점검 주기를 수립하여 구성원 의견 청취 및 검토를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할 의무 자체가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업무충실도 평가' 절차 마련 의무도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기관 내에 '안전관리부서'나 '현장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운영 중이라면, 경영책임자는 이들이 안전 관련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의 일반적 관리 의무). 또한 기관이 교육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공단 내에 시설 관리, 장비 유지보수, 또는 실습장 운영 등 현장성 작업이 수반되는 부서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 의무와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는 작동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기관이 수립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구성원, 수급업체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유하고 전파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기관에서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이 기관의 홈페이지 등 주요 공유 공간에 공유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기관장이 수립한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대한 검토 및 공유 과정에 대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HRDK 안전경영자문위원회'를 안전보건 현안에 대해서만 논의될 수 있도록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의 관리 체계 강화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통해, 기관장을 기관 및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기관의 안전관리 조직은 기획운영이사 소속 ‘ESG안전센터’이며, 「규정 제8조(안전총괄부서)」를 통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명시하였고, ‘25년 대비 부서(부서장급)에서 센터(센터장급)로 격상과 더불어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였다. 안전관리조직체계는 ESG안전센터장 명의로 각 소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안전관리 주무 부서의 장)에게 전달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실무를 맡아 이행하고 있다. 안전관리조직의 역량과 전문성 여부에 대해서, 안전보건전담부서 인원 중 센터장 및 일부 인원이 안전 및 보건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은 전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안전 및 보건 관련 추가 채용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25년 자체 직무분석조사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를 직무급 대상으로 반영하여, 관련 부서장(센터장)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며, 그 외 인원은 ISO 인증교육 등 외부교육 지원과 안전보건 관련 자격 취득에 대한 도서와 응시료 등을 지원받고 있다. 그리고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에게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주관으로 2박3일(16시간) 체험교육장을 포함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6개 권역을 순회하여 추가 교육을 수행하였다.

기관은 안전관리중점기관이 아님에 따라 안전경영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으나, 자체적으로 ‘안전경영자문위원회’라는 유사한 기구를 운영하여, 기관 경영전략 수립과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기관은 「규정 제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 운영규정을 통해 분기마다 기관장 참여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한다)를 분기마다 개최·운영하였으며, 의결된 안전 및 개선사항 등은 차회 보고안건으로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더욱이, 기관은 자체 ‘안전신문고’ 등을 운영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 및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함에 따라, 직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기관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인 ESG안전센터 중 일부 인원은 안전보건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 모든 인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기관의 규모와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한 조직분석 등이 수행되지 않고 편성되어, 체제의 구성과 인력의 규모가 적절한지 알 수 없다. 또한, 기관장 직속으로 되어있지 않아, 안전보건활동이 강력하게 전사로 이행되기에는 권한과 이행력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규정을 통해 특정 기준을 지정하였으나, 안전관리 실무를 수행하는 안전담당자에 대해서는 특정 경력이나 자격 등이 없음에 따라, 신입직원 등 경력과 숙련도가 낮은 인원이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우려가 있다.

안전경영위원회(안전경영자문위원회)는 주로 외부전문가 1인 교수 위주로 진행되어, 다양한 직종의 의견을 듣기에는 부족하고, 해당 내용에는 안전근로협의체 또는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나 경영전략 위주로 운영된 점이 아쉽다. 산안위의 경우에는 규정상 7일 전에 개최계획을 통보하여,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공문 및 활동 등이 2분기 실무협의회를 제외하고 확인할 수 없었다. 추가적으로 ESG안전센터로 격상한 것은 '26년 1월부터 이행됨에 따라 '25년부터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평가에서 아쉬운 점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기관은 안전관리 전담조직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전담업무를 맡고, 해당 전문인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보다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직분석 등을 통해 기관의 특성과 규모에 따른 적정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관장 직속으로 안전관리전담조직을 두어,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이행력을 보다 강화하기를 권장하며, 안전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담당자에 대해서는 특정 기준 등을 정하여, 경력과 숙련도를 보유한 인원이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전경영위원회(안전경영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1인 교수의 자문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관점을 보다 넓힐 여지가 있다. 더욱이, 기관은 안전관리중점기관은 아니나, 안전근로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이에 지원하기 방안을 안전경영위원회(안전경영자문위원회)에 논의하도록 하여, 기관의 임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의견으로 ESG안전센터로 격상에 대한 효과는 '26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여, 향후 긍정적인 활동 및 성과가 기대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ESG안전센터에 대하여 인력의 적정성 평가하고 업무분장 명문화
2. ESG안전센터가 안전보건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제도 도입

[3] 안전보건경영 투자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소요예산 편성을 위하여 ‘실행예산 편성 기초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취합하여 소요예산 편성이 활용하고 있으며, 25년 소요예산 편성 중점 고려사항에 AI활용과 안전경영 사례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공지하며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기관은 HRD재정혁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운영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기준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재정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은 전반적으로 소속기관이 본부 예산부와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ESG 안전센터가 기관의 안전보건관련 예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부의 ESG 안전센터는 사업전체 예산이 아닌 사업에 포함된 안전보건예산의 합리적 편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소요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기관은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보건활동의 세부 추진과제 별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검토 이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기관은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보건활동의 세부 추진과제별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해당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예산 집행 원칙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에 의거하며, 공단의 수입지출예산관리는 예산관리자가 통합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예산집행실적 분석은 본부 부문 예산관리자가 수행하며, 사업추진실적 제고를 위해 소관사업예산에 대해 매 분기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현황과 성과분석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기관은 ‘25년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구입 등으로 당초 편성 안전예산 대비 117% 집행하며 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 집행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기관은 예산 편성과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 관리 측면에서도 ESG 안전센터의 역할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ESG 안전센터에서 기관의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ESG안전센터가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에 적극 관여하는 프로세스 도입

【4】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절차서·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심사의견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27개 법규에 대해 연 1회의 검토 결과와 전년도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5년 8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등 규정의 최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규정은 공단 전체 사업장에 공문으로 그 개정 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개정된 규정은 내규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전 직원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중 '24년 10월 개정된 조항인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예방'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이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법규검토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법규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검토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규정의 상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4년 12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과 안전보건활동 매뉴얼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방대한 양의 지침서, 절차서를 안전보건활동지침서 12종으로 통폐합하는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지침서는 '25년 12월 개정하여 최신화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 기본 안전관리」 지침서는 '25년 1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영하여 “폭염시 작업장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개정된 규칙의 일부 내용만 반영되어 있고, 온습도계 비치 및 기록보관, 폭염작업시 관리요령을 미리 알리는 조치, 소금과 음료수 비치 등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이 누락되어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지침」 중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에는 훈련내용, 주기 등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이나 측정자의 자격, 장비의 유지관리 방안 등 현장작동과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규정 제30조(유해위험물질의 취급 및 관리)」에서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하위 지침이 필요하나, 화학물질 유해위험 정보제공에 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지침」만 제정되어 있으므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여부 파악 및 법적 조치사항이 이행을 포함한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지침서로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기관의 지침서는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와 활동과 연계하여, 실제 현장에서 업무시 안전관리가 작동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법규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법규 검토 절차 마련 및 검토과정 강화
2.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지침」을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지침서로 고도화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조직·업무 특성, 사고통계 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의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실천하여 안전한 환경조성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No.1 안전지킴이’의 비전과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의식 함양으로 원천적 사고 예방’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추진전략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합 자기규율 예방체계 작동’, ‘근로자 참여를 통한 현장에서의 시스템 작동 강화’, ‘안전교육 및 캠페인 확산으로 직원 안전인식 내재화’를 수립하고, 안전보건경영체계,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의 4대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13개 추진과제는 추진방침, 추진일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속기관에서 안전경영계획에 기반하여 세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국가자격시험 안전관리대책 추진’,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 안전계획수립’, ‘HBDK 행정정보시스템 재난대응본부(TF) 구축운영’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4대 분야 13개 추진과제의 실효성과 현장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각 추진과제는 실천 가능한 세부과제로 나누고, 세부과제별로 지표화 가능한 핵심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부서 지정, 추진일정 수립, 관리책임자 명시, 주기적인 평가방법 및 미이행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포함하는 등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가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달성 목표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경영책임계획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전직원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노사의견 수렴을 위한 산안위를 거친 뒤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었다. 안전경영계획의 수립 및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전년도 이행 과제에 대한 시사점 환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기관의 고유업무와의 부합성을 검토하는 등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절차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안전경영책임계획부터 안전보건활동 추진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고경영진까지 의견을 전달하여 환류하는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가칭) 안전경영책임계획 실무추진단(TF)

또는 제도를 도입하여 미이행 과제에 대하여 조기에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즉각적 대응과 실행력 강화가 필요하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따른 13개 추진과제의 실효성과 현장작동성 향상 노력

2. 관리역량

【1】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 전 단계에서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 결과 공유 및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위험성평가를 「규정 제21조(위험성평가)」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은 「위험성 평가 지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평가담당자 중심의 기관단위 평가에서 관리감독자 중심의 부서단위 평가로 개선하고, 공단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수시 위험성평가 대상의 경우 지침서 상의 평가대상과 실시계획서, 그리고 결과보고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가 대상이 서로 상이하여 혼동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고, 도급사업의 경우 수급자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기관에서는 평가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인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시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사전 안전보건정보 수집 단계에서 부속 및 소속기관별 관리감독자 등 담당자 사전회의, 근로자에 대한 사전교육, 안전보건정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작성, 유해·위험요인 발굴 설문서를 활용 청취조사 및 순회점검,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고위험작업 및 장소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부산지역본부 등 일부 소속기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실시한 이후 관리감독자 등 평가담당자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담당자 회의를 통해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적정성 검토,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구분 및 확정,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각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역할 부여,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근로자 등 참여

및 공유 방안을 마련한 후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위험성 평가 지침」에서는 평가대상으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유해물질을 포함한 평가하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서 연 2회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상반기만 공유되어 있으므로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의 공유가 필요하며, 회의, 행사, 교육 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주지시키는 등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지역본부(이하 ‘대전본부’라 한다)와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본부’라 한다)는 규정 및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라 수립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을 통해 4월 초부터 6월말 까지 평가를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위험성평가 실시 알림 공고를 통해 전 근로자 대상으로 정기 위험성평가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였으며, 대전본부는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대구본부는 부서별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전 근로자 대상의 위험성평가 사전교육을 통해 위험성평가 추진목표, 평가 대상 구분방법, 유해·위험요인 조사 실시, 위험성결정 방법 등을 공유하였다.

대전본부와 대구본부(이하 ‘현장’ 이라 한다)는 실시계획 조직구성 상 부서별 위험성평가 수행자를 지정하였으며, 관리감독자와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순회점검 후 부서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에 대해 시설물 관리 공정(빈도강도법) 및 그 외 전 공정(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으로 반영하여, 대전본부는 부서별 위험성 결정 회의를 통해, 대구본부는 안전담당부서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전본부에서 개선대책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은 락스, 페인트 등 시설물 관리 후 남은 유해물질 보관방법 미흡에 따른 사고 위험으로 파악되었고, 감소대책 시행으로 물질별 MSDS를 비치하고 관계자 외 임의사용 방지를 위한 잠금 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대구본부의 경우, 감소대책 수립과제 중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제출 당시 미이행 과제인 ‘대강당 측 옥상 수직사다리 통로에 배관이 설치되어 이동에 방해 및 수직사다리 상단 높이가 낮아 추락 위험’에 대해 하반기 10월경 청사 지붕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위험성평가 개선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대전본부와 대구본부는 2025년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을 전 근로자 대상으로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수립한 감소대책과 실행에 대해 공유를 실시하였다.

다만, 대전본부의 부서별 위험성 결정수준 회의 및 사후교육 미참석자 대상으로 실시한 부서별 별도 교육(회의)에 대한 별도의 기록 관리가 보관되지 않아 참여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위험성 결정으로 수립된 개선대책의 수립계획 문서

및 시행 후 이행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 내용에 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구본부는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항목 가운데, 목제가구 공예 디자인 분야에서 회전체 및 톱날과의 접촉으로 인한 절단 위험이 존재하나 현행 안전보건조치로는 방진마스크 착용 및 톱 사용 시의 안전거리 유지만이 반영되어 있고, 기계전기 분야 시험에서는 절삭기 날 접촉으로 인한 절단 위험이 존재하고 비상정지장치 확인 및 절연장비 사용이 조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절연장비 사용 등은 절단 위험에 대한 위험성 수준을 ‘하’로 판단하기 위한 현재의 안전보건조치의 근거로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대전본부는 미참석자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관련 내용이 공유 될 수 있도록 시스템(문서, 메일 공유)과 서류(회의록 등)를 본사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할 필요가 있고, 본사의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 개선 활동 모니터링을 관련 부서 혹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혹은 설문조사를 통한 환류활동을 실시하길 바란다. 더불어, 대구본부는 현재의 안전보건조치가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저감하는 충분한 근거 없이 위험성 수준을 ‘하’로 판단하고 있어, 각 유해·위험요인별로 현재 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조치 미비 사항을 보완한 뒤에만 ‘하’로 판단되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절단 위험이 존재하는 설비나 작업에 대해서는 가드 설치, 자동차단장치, 잠금표지(LOTO) 등 상위 제어 조치를 갖춘 상태에서 위험성 수준을 평가하길 바란다. 추가적으로, 현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근로자 대상 사전교육 및 사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관련한 역할 전문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 이수 등을 추진한다면 기관의 위험성평가 이행수준에 긍정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수시 위험성평가 진행 과정에서 정의하는 평가 대상의 명확화
2. 지역본부의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 철저

[2]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건강 유지·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와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보건관리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예방 활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체 청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현황을 조사하고, ‘2025년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 한다) 관리 계획 수립’에 따라 MSDS를 관리하였다. 또한, 조사하고 파악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사용처, 사용 단위, 보관 위치, 위험성 등을 목록화하였고, 목록화된 현황을 근거로 청소 및 시험장에서 취급하는 검정재료를 사용하는 자체 청사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고, 임시 및 단기간 작업에 해당하여 전체 청사가 작업환경측정 비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야간작업 및 용접, 분진 작업 등 유해인자 노출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진대상자 직원(23명)을 파악하였다. 다만, 특수건강검진자의 검진 결과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리 체계 고도화가 권고된다. 또한, 기관에서는 독감 등과 같은 법정 감염병 발생 사항은 없지만 발생 시 대응 방안과 상황 공유, 후속 조치 등 처리 절차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관은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활동으로 ‘2025년도 직원 보건인식 설문조사 실시 계획 보고’에 따라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문제, 불만족 항목 등을 직군별로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전 직군 보건 프로그램 요구와 건강 문제 중 ‘근골격계 통증’ 응답 다수에 따라 의견 반영하여 ‘HRDK 건강증진의 날’을 계획 및 실시하였다. 또한, ‘2025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에 따라 임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다만, 근로자의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 중 근로자 관리 및 위험군 분류의 설정 수준이 건강진단 실시 유무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등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뇌심혈관계·근골격계·정신질환 현황 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진단 및 조사에 따른 위험군 분류·관리를 실행하는 등의 활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원 보건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 의견 청취 결과에 따른 다양한 보건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상 유해요인 개선과 예방 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 시기 등 일부 교육 활동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과 관련하여 기관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및 무인정신건강검진 키오스크, 마음버스,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였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의 현황 관리를 실시하였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경우 전문기관 위탁 운영과 공단 내·외부(HRDK미래교육원·국립산립치유원·전남관광재단) 협업을 통해 기관특화형 힐링프로그램을 자체 운영 중이며, 정신건강 개선 활동과 관련하여 무인정신건강검진 키오스크, 마음버스,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근로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사내 게시판 활용과 참여 신청을 위한 안내 문서 시행으로 한정되어 근로자 참여를 위한 다양한 유도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 개인별 건강개선 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며 개인별 건강 상태 현황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 활동 강화
2.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 중 위험군 분류·관리 활동 보완 필요

【3】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 참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인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노동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에서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 구분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고, '2025년 안전·보건 교육추진 계획'에 따라 교육 대상 인원,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시기, 횟수 및 시간 등 세부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전년도 성과, 시사점 등의 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교육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하여 'HRDK 온라인 교육과정 관리자 권한 부여 요청'을 통해 안전전담조직이 자체적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 온라인 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정 산업안전교육 수료자 포상을 통해 교육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일부 교육의 수료율이 저조하여 교육 계획수립 시 목표 수료율 설정 및 내부 평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부서장 코칭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실시한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실시 내용이 미흡하여 계획한 교육 내용, 시간에 따라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 교육 추진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과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경영시스템 인식수준과 업무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인지와 그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답변 수준이 양호하였다. 특히 관리자 및 근로자 모두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상·하반기 실시한 '안전 연극'에 대한 만족도와 내용 인지 수준이 높은 답변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비상사태 발생 시 기관 내 역할에 대한 관리자 및 근로자의 인지 상태는 다소 미흡하여 기관 내 직원들의 역할 인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 대상 비상 대응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역할 분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획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규정에서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정하고 있으며, 제안 제도인 HRDK 제안 제도와 아차사고 발굴 제도인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였다. 상반기 계획수립 후 제안제도와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하여 반기별 성과측정 및 포상 제공을 반기별로 실시하였다. HRDK 제안제도의 경우 성과관리부 주관으로 안전과 관련된 제안이 들어올 경우 안전전담조직에서 검토하였으며, 제안제도의 일환으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안전신문고의 경우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모두 조치하였으며, 접수 건수, 위험·난이도 등 기준에 따라 신문고 접수 우수자 및 신문고 운영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참여를 유도하였다. 다만, 아차사고 발굴제도로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며 개선 완료 후 사례 공유와 더불어 기준에 따른 현장 이행여부 확인을 포함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면, 개선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화된 개선 관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은 규정 및 「안전보건교육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다. 안전교육 및 캠페인 전개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부서별 또는 기관 전체 대상으로 재난 대피훈련, 캠페인 실시 등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장의 근로자들은 온라인교육으로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본사의 미래교육원 및 안전보건부에서 교육 수강현황 알림문서를 통해 미이수자 정기 관리를 실시하고 조기 수료 직원을 추천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통해 교육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각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있으나 해당 인원에 대한 법정 직무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한 점검 및 현행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는 별도의 계획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되어 교육 현황을 관리하면 체계적인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사와 지역본부에서 담당하는 교육을 구분하여 해당 직무 및 계층을 파악하고, 세부운영 계획 및 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활동 인식과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는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근로자 면담에서 위험성평가의 주요내용과 실시과정 등을 양호하게 인지하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활동 참여수준이 근로자까지 전파되도록 한 노력이 보인다. 다만, 일부는 공포된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성원들의 관심과 인지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본사에서 수립한 ‘아차사고 발굴제도 및 안전보건신고 제도 운영 계획’에 따라 현장은

안전보건 경영책임계획 상 자체 안전신문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전본부는 매월 1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시설물 자체점검 시 발견된 발굴건과 상시 접수 건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구본부의 경우 매월 15일에 상시 접수된 건에 대해 개선대책을 1개월 이내 수립·시행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민원인 대상의 아차사고 및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해 접근성이 높은 1층 청사 입구에 설치하여 상시 접수를 시행한 점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현장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인다. 상기 제도의 포상은 본사에서 온라인 안전 신문고 등록현황을 바탕으로 반기별 인센티브(기프트콘) 제공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지역본부의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 등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면 더욱 내실화되고 체계적인 활동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목표 수료율 선정 및 내부 평가 연계 강화
2. 「안전보건교육지침」에 따른 법정 직무교육 수료 현황 관리 강화

【4】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매뉴얼·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비상상황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재난 및 비상상황 대응 절차, 유형별 비상상황 기준 및 안전수칙 등이 포함된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비상대응 훈련 시나리오 구성 시 건물 내 작업현장을 고려한 2025년 밀폐공간(저수조 내 청소 작업) 안전사고 예방, 소방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비상시 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후로는 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 실시 결과상 훈련 내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향후 훈련을 실시할 때 평가회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2025년 안전경영책임계획 상으로는 전 직원 대상 비상 대응 훈련 참여로 명시되어 있지만,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 훈련의 훈련대상이 10명, 심폐소생술 교육의 훈련대상이 45명으로 확인되는 등 기관 내 비상 대응 훈련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관은 비상상황 대비·대응을 위한 소화기 배치 위치 및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의 비상시 대비, 대응 시설에 대하여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은 재해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 및 재해처리 절차, 사고 유형별 대응 체계 등이 포함된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지침을 최신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산업재해 발생 후 2주 이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4월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6월에 사고조사보고서(재발방지대책)가 수립되어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본부에서 사고 관련 종결보고서를 통해 재발방지대책 이행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재발방지대책이 이루어지는지 본사에서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시험 사전교육 시 산업재해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기관 내 비상 대응 훈련 참여 인원 확대
2. 최신화된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지침'을 지역본부에 교육 및 전파하여 공유

【5】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규정 제37조(도급 계약시 수급인 선정)」과 「지침서(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따라 적격수급인 선정과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5년 8월 하반기에 안전실무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컨설팅 및 권역별 간담회'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자료를 통해 도급사업 적격선정과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명확히 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작동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도급사업 현황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수급업체 현황'이라는 표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12월부터 추진하여, '25년 11월에 모의 운영 중인 '경영정보 시스템 도급사업 안전관리 기능'을 가까운 시일에 도입하여, 전사적인 도급사업을 관리하고자 준비 중이다.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기관은 지침서의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을 통해 나라장터 등 입찰에서 사전에 안전보건수준평가와 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관은 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서는 절차에 따라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통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수급업체가 안전보건활동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침서 '6.7 점검 및 시정조치'에 따른 순회점검표 양식을 통해 작업 중에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침서 '6.10 환류'에 따라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안전보건수준 재평가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에 따른 주 1회 순회점검과 별도로 일회성 단기 도급사업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였고, 재평가에 경우에는 최초 평가와 별도로 '이행 준수' 중심의 평가와 평가의견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환류 수준을 적절히 하고자 노력한 점이 보인다.

혼재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기관은 혼재작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향후 혼재작업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관리 역량을 평가하였다. 기관은 지침서를 통해 해당 도급사업의 주관 부서(의장(관리감독자))에게 혼재작업이 있는 경우, 위험요인을 점검 및 관리토록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첨 '혼재작업 실시계획서' 양식을 통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또한, 안전실무자들을 위해 8월에 실시한 '안전컨설팅 및 권역별 간담회' 교육자료에도 혼재작업에 대한 관리방법 및 절차를 간략하게 작성하여 교육함에 따라 어느 정도 혼재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기관의 도급사업 현황관리는 향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운영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안전보건조치보다는 계약정보 위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작업일시 및 작업장소, 혼재작업 여부 등이 항목에 없음에 따라, 혼재작업 여부를 전사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침에 대해서는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에 대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사업장은 제외(면제)하고 있어, 해당 도급사업의 작업과 관련되지 않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업체가 안전보건수준을 평가받지 않고, 도급사업을 수행하여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기관의 지침이나 교육자료 등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기준에 대한 안내 절차가 누락됨에 따라, 일부 소속기관 및 본부의 도급사업 실적자료(수의계약 등)에는 안내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행의 여부가 불확실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최초평가)는 평가표에 점수에 대한 평가의견이 없어, 신뢰도 확보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협의체의 경우에는 '실무협의체'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도급인(대표) 및 수급인(대표)이 아닌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부서의 장 위주로 운영하고, 이를 안전보건협의체로 같음·운영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구성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은 2분기까지 운영하다가 관리책임자의 퇴사로 인하여, 3분기가 개최·운영되지 않았으며,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확인도 지침이나 교육자료 등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없어, 몇몇 도급사업 실적자료에는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관은 향후 도입되는 도급사업 전산시스템에 안전보건조치 위주로 항목을 구성·운영하고, 작업일시 및 작업장소 등을 추가하여, 기관의 혼재작업 여부를 전사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격수급업체 선정에 대해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보유한 업체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면제)보다는 가점을 주는 방안으로 변경·검토하고, 지침이나 도급사업 안전관리 관련 교육자료('안전컨설팅 및 권역별 간담회')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기준 사전안내와 위험성평가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전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의 경우에는 관련 법의 기준과 구성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은 관리책임자가 부재하더라도 대표 또는 차상위 인원이 수행하도록 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은 「규정 제37조(도급 계약 시 수급인 선정)」, 「지침서(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지침)」를 근거로 본부에서 수행한 '안전컨설팅 및 권역별 간담회 실시계획' 절차에 따라 적격수급업체 선정과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장은 수급업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계약은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과 '구매요구'로 진행되나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조치는 위험 요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장은 안전담당부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도급 가능여부와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작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수급업체 절차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계약 이전에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직접 전달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방법은 협의 등을 통해 논의하고 해당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의견은 ‘도급사업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서’를 활용하고 있다.

기관은 지침 등에 작업기간에 따른 순회점검 주기를 달리하도록 하였고, 현장은 이에 따라 작업 중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작업 종료 후에는 순회점검 결과 및 안전작업허가 내용을 토대로 안전보건수준을 재평가하고 있다. 순회점검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이행, 안전보호구, 혼재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기본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작업현장의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있다. 안전담당자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은 안전담당자를 본부 주관 ‘안전보건담당자 직무교육’에 참석토록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구본부는 시설물 관리자가 순회점검 시 안전보건담당자와 동행하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순회점검을 수행하였다.

혼재작업 조정 및 현황관리에 있어, 대구본부는 주간회의자료나 안전보건협의체 회의결과를 통해 관련 수급업체와의 사전미팅 및 안전보건협의체에서 혼재작업 여부를 사전 파악하여 일정을 조정하였다. 대전본부는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작업허가서 제출 시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순회점검시 안전조치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다만, 현장의 수급업체 현황관리 목록은 계약명, 계약상대자, 금액, 기간, 작업내용 등 계약 사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수급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시간, 장소, 사용설비, 협의체 대상여부, 특별교육 대상작업 보유여부 등 안전보건관련 정보반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입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안내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내용에 대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이 첨부되어 보관되지 않아, 실제 시행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관리감독자 1인 평가체계를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2인 이상 평가하도록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 도입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순회점검에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작업허가서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한다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점검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기관 지침에 따라 30일 미만 도급사업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수급업체 현황관리목록 등에 그 근거를 기록하도록 하여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의 준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의체 회의록 내용은 관련 법령이 정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그 외 협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차기 협의체에서 후속조치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수급인이 공동으로 작업현장의 안전조치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참석대상의 참석이 확인되도록 참석자 서명 등 관련 기록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합동안전보건점검 결과는 실무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내용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므로, 확인된 위험요인 또는 개선, 시정요구 사항 등에 발생할 경우, 이행계획 등에 대한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기관은 「규정 제38조 제1항」, 「지침서 '6.9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등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및 휴게실 등 위생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수급업체에게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보장받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기관은 QR코드를 통한 안내자료를 전사(본부 및 소속기관)에 맞게 제작하여, 수급업체에게 제공·안내하였으며, 본부의 다양한 휴게공간(1층 개방 공간 및 2층 별도 휴게공간)과 청결상태 등을 볼 때, 전사적으로 수급업체에게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은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및 위생시설 지원에 대한 안내자료가 문의처, 수용인원 비품, 시설 등 내용이 없어, 수급업체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현장작동성 평가 내용을 감안한 결과, 일부 첨부가 되지 않아, 일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별교육 이행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작업허가서 양식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양식의 내용이 '안전보건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소속기관의 안전담당자가 '특별교육'임을 파악·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기관의 안전보건정보(위험정보 등) 제공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취지상, 밀폐공간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사업장내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확인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안전보건 교육자료 및 작업중지요청제 안내 등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관은 안전보건자료 및 위생시설 지원에 대한 안내자료에 수급업체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의처 등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안내하기를 권장하며,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을 통한 안내와 보장 활동은 지침이나 도급사업 안전관리 관련 교육자료 등에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기관의 안전담당자들이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허가서 양식 등에는 '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특별교육’이라는 내용 추가와 관련 작업을 명시하여, 일반 행정 인원이라도 누락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정보(위험정보 등) 제공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련 법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 장소(밀폐공간 등)의 위험정보 등을 관련 수급업체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확인을 작업허가서나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기를 바란다.

현장은 안전보건교육과 위생시설 지원 사항이 반영된 기관의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홍보물(‘청사안전시설 및 안전가이드 알고싶다면’) 등을 QR코드를 활용하여 수급업체에 안내하고 있으며, 컴퓨터,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등이 갖춰진 안전보건교육 장소와 휴게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대구본부에서는 휴게시설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하여 매일 시설과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교육 이행 확인과 환류활동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작업허가서’ 및 수급업체의 교육일지 등으로 계획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보건정보(위험정보 등)는 ‘안전보건정보 제공확인서’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작업허가서와 수시 위험성평가를 통해 수급업체가 제공된 안전보건정보(위험정보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수행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장이 제공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이 도급사업 관련 서류와 같이 첨부되지 않아, 수급업체에게 제공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교육 및 휴게시설 사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의처나 절차 등을 홍보물 등에 포함하여 수급업체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자료는 정기,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자료 보강과 함께 최신화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현장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작업허가서 양식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등)’으로 표기되어, 실무자가 특별교육과 혼동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

휴게시설 관리에 대해서, 대전본부는 위생시설(휴게시설 등)은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비품이나 설비가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정보 제공(위험정보 등)은 관련 법령의 대상작업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도급작업에 대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법령의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안전보건정보를 작업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전사적 혼재작업 현황 파악 및 관리 철저
2.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2 「안전수준」 범주 심사

1. 작업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안전법, 국토안전관리원]

1. 작업장 안전관리

【1】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노동자 및 이용국민이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현장은 「사업장 기본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매월 14일 안전점검의 날에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실행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은 복도와 이동통로의 정리정돈과 조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휴게시설은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실, 기계실 및 그 외 위험시설은 ‘관계자의 출입금지’표지 부착과 시건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사 시 대피를 위한 피난대피도 부착 및 관련 설비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안전보건표지 및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현장특성 및 물질보관 현황에 따라 부착관리 되고 있으며, 개인보호구는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으로 종류와 보급현황을 기록관리하고 있었다.

다만, 대전본부는 기계실내 하부 배관, 화학제품 보관함 주변에 배수구 등과 대구본부의 옥상바닥 단차, 환기팬 덕트 등 장애물로 인하여, 일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조도의 경우에는, 대전본부의 옥상 저수조 옆 통로가 조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추가적인 조도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전기실의 변압기·큐비클 주변은 안전 거리 확보를 통해 감전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저수조(물탱크) 상부 출입 사다리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등에 안전보건조치가 요구된다. 화학물질 보관함은 경고표지와 보호구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염화칼슘 및 일부 페인트 용기에 대해서는 MSDS 경고표지를 조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 개인보호구는 업무 및 작업특성과 종류, 작업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 관리될 필요가 있고, 호흡용 보호구 등 전염 우려가 있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경우에는 별도 보호구함에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장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안전보건조치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위해서 현장은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분야별 안전점검 시 통로, 경고표지, 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기본 안전보건조치 사항이 관련법령 요구수준으로 관리·유지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개인보호구에 대해서는 현장 필요인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빠짐없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 개인보호구 등을 조사하여 구비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별도의 개인보호구함을 설치하여 개인보호구의 위생을 보장하기를 바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작업장의 기본 안전보건조치가 관련법령 요구수준으로 관리·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방안 마련

【2】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이용객의 추락 방지와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현장은 보유하고 있는 저수조, 항온항습기, 펌프, 보일러 등의 기계기구설비 목록에 대한 현황관리를 실시하고, 매월 지역본부별 안전점검의 날에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시설물(건축물), 가스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에 대한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본부는 싱크대 등 습윤 환경 주변 콘센트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덮개가 설치되어 있고, 분전반은 청결하게 유지되어 있으며, 외형 접지가 적절히 확보되어 있었다. 또한, 누전차단기 및 절연 커버도 적절하게 설치되어 전기설비의 안전성이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건물 구조와 관련하여, 지상 3층 복도의 중앙부가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추락의 위험이 존재하나, 복도 난간에 추락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근로자의 위험 인지를 강화하였고, 옥상 및 승강기 기계실 등 추락 위험 장소에는 '추락 경고'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 출입 통제 및 위험 예방조치가 시행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전지역본부의 노력이 보인다.

한편, 대구본부는 청사의 노후화로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되어 냉난방기 교체 등 순차적으로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대구본부의 분전함은 전반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고, 사무실 내 사용하지 않은 콘센트에 덮개를 부착하여 감전 및 화재에 대한 조치를 하고, 기계실 내 LOTO 작업절차서, 작동금지 표지, SAFETY PADLOCK 등을 비치하고 있었다.

다만, 대전본부는 승강기의 권상기에 방호장치가 미설치되어 있어, 회전말림점 및 절단점으로 인한 끼임, 절단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일부 분전반의 출입구에 낙차가 존재하여, 비상시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분전반 내부의 배선용 차단기에 덮개가 미설치되어 전선이나 손 등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 또는 기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고, 정화조 폐수(오폐수) PNL 작동패널에 확인되지 않은 별도의 콘센트를 따로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전본부에서 LOTO에 대한 시건장치를 보유하고

있고, 안전점검의 날에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나, 관련 근로자가 작업계획서 및 LOTO 조치에 관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음에 아쉬움이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본부는 권상기 회전부 및 절단 가능 부위에 방호덮개 또는 방호울 등의 안전 방호조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부 분전반에서의 감전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담당자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분전반 내부 충전부에 전선 및 손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고, 정확조 오퍼수 작동패널의 경우 전기배선도 등을 파악·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 폐기할 필요가 있다. 관련 작업자를 대상으로 LOTO절차와 작업절차서를 활용하여 작업수행 방안 등에 대한 LOTO 교육을 실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대구본부는 분전함 충전부 방호조치가 없어 전선이나 손 등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 또는 기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고, 일부 작업현장의 노후화되고 먼지가 쌓여있는 콘센트에 별도의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LOTO교육에 대해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 ‘유해위험기계 등 안전관리, 전기재해 예방’ 등의 교육내용으로 같음하고 있어 시설관리 업무자 대상으로 대구본부 자체적인 LOTO교육과 작업계획서 및 작업절차서에 따른 작업수행 방안 등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더불어, 작업현장의 추락 및 낙하에 대한 위험방지조치에 대해서, 옥상 저수조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이동통로가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통로 진입 시 한단 높이로 올라가야 되어 추락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계실 저수조의 경우 작업사다리에 별도의 시건 및 추락위험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분전반 내부 접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덮개를 설치하고, 설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기록하는 절차를 마련하길 바라고, 기계실 등 작업현장에서 미사용 콘센트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멀티탭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멀티탭 등 전기안전에 대한 교체주기, 성능기준, 사용방법 및 점검 등을 수립하여 전기 위험방지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관련 작업자를 대상으로 LOTO절차와 작업절차서를 통한 작업수행 방안 등에 대한 LOTO 교육을 실시하길 바라고, 옥상 난간에 추락주의 표지를 부착하여 작업근로자 및 관계자에게 위험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철조망 및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가 요구되고, 기계실 저수조의 작업사다리에 시건을 실시하고 추락위험 표지 부착일 필요하며, 안전난간대 혹은 안전대(안전줄)을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길 바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현장 근로자에 대한 LOTO 작업절차서 교육 필요
2. 현장 내 기계·기구 및 충전부 등 안전보건조치 및 동종 사례 재발 방지

【3】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핵심가치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과 노동자 중독·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대전본부는 소방계획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며 자체점검 및 업무수행, 소방훈련 및 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5년도 소방훈련은 두 차례(9월, 12월) 실시하였다. 대전본부의 화재위험 작업장소는 제과제빵 시험장 및 조리시험장으로 해당 작업장소에 가스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가스분야 세부점검표를 활용하여 가스계량기, 배관, 가스누출여부, 가스용품, 안전장치 등에 대해 매월 점검하고 있다.

한편, 대구본부는 자체 소방훈련교육(상반기)와 소방관서 합동 소방훈련교육(하반기)을 실시하였고, 비치된 소화기, 소화설비, 유도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흡연구역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 문서고 및 창고, 서버실 등 작업공간에 수립된 소방계획서에 따라 적정한 대수 및 분야별 소화기를 비치하여 매월 외관점검 등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가스 정압기에 대해서 청사시설 가스설비 업무대행을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업무대행 업체에서 시건 실시 및 작업허가서에 따른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시건장치가 가능한 화학물질 보관함에 비치하고 있고, 화학물질 취급목록을 기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MSDS 보유 및 게시가 적정하며 취급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주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전본부는 고가수조, 지하수조, 정화조에 대해, 대구본부는 지하 및 옥상 저수조에 대해 질식 위험공간으로 파악하여 지정하였으며, 해당 작업장소에 대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질식위험 작업공간에 대한 현황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대전본부는 소방훈련이 하반기 2회로 집중되어 있어 반기별 실시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24년 소방훈련 당시 출장업무로 미참석한 인원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전기실은 하론가스 소화기가 아닌 일반

소화기가 설치되어 화재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소화기 및 설치 대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대구본부는 외부 전기차충전소에 일반소화기가 비치되어 화재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소화기 비치에 필요하며 기계실과 비상발전기실에 소화기 비치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도시가스 정압기에 대해 폭발위험장소에 관한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기계실 일부 가스밸브에 적합한 가스범위 표시가 없어 수치 확인이 불가하였다.

더불어, 대전본부에 설치된 정화조에 위험을 알리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작업자 및 관계자에게 위험 사항 인지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장에서 보유 중인 가스농도 측정기의 경우, 연 1회 이상 규정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시되어 있지 않았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관리 측면에서도, 기관 ‘청렴안전 인사이드’를 통한 비대면 공유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본부 근로자 또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구조 훈련 등에 대해 대면교육이 미실시되어, 질식에 대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수준의 내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본부는 '25년도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미참석자 대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미참석자에 대한 추가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화재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소화기 및 설치 대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화 대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대구본부는 전기화재 종류에 맞는 질식·습식 소화포를 설치하여 화재대책을 시행하고, 기계실 및 비상발전기실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길 바란다. 또한, 도시가스 정압기의 폭발위험장소 적용 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적용여부에 따라 선정이 되었을 경우 취급방안, 관리방안 등에 따라 관리하길 바란다. 더불어, 기계실 가스 기준 수치 표시는 시인성이 분명한 색깔(빨강, 노랑 등) 및 표시(화살표 등)로 설치한다면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정화조 등 밀폐공간 작업구역에 밀폐공간임을 알리는 출입금지 표지 및 작업허가 게시판을 설치하여 작업자 및 관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가스농도측정기 검·교정 이력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검·교정 실시일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길 바란다. 더욱이, 근로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의 밀폐공간 긴급구조 훈련 및 비상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질식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하기를 권고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소방훈련·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추가 훈련·교육 실시
2. 정화조 등 밀폐공간 작업구역 출입금지 표지 및 작업허가 게시판 설치
3. 소화기 작동여부 및 도시가스 폭발위험 관리 강화

【4】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핵심가치

기관은 고위험 작업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제도와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현장은 「규정 제22조(작업중지요청) 및 제24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과 「지침서(안전작업허가지침)」, 본부의 ‘안전컨설팅 및 권역별 간담회 실시’ 내용에 따라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작업허가제, 작업중지제도 등)를 수행하고 있다. 현장은 모두 시작 전 작업허가제, 작업 중 순회점검을 통해 수급업체 또는 직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작업중지제 실적은 없으나 본부에서 제작한 홍보게시물을 활용하여 작업중지제를 홍보하고 있다.

다만, 일부 작업허가서에는 점검항목에 대한 확인 여부 기록이 누락되거나, 검토자(안전보건담당자) 서명이 누락되는 등 작업허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사례가 확인된다. 또한, 작업계획서가 요구되거나 유도자, 작업지휘자 등의 배치, 작업 시 사용되는 설비에 대한 상태 점검 등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허가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 아울러, 작업허가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작업 전 사전교육은 일부 작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작업 중에는 수급업체나 근로자가 해당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부분은 없었다.

따라서, 현장은 작업허가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하여 안전보건조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 전 사전교육은 해당 작업과 관련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관련 강사 또는 관리감독자들에게 주지하고, 작업중에는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는지 점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작업중지요청제는 제도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사례 공유, 작업중지 요청에 따른 대응훈련 등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해당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외부 출장업무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 현장은 「규정 제25조(교통재해예방)」,

「제35조(출장직원의 안전보건 예방)」에 따라 이행하고 있으며, 외부 출장업무로는 직업훈련사업 컨설팅·모니터링, 필기 및 실기시험, 외국인 고용지원 모니터링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본부에서 각 시험종목별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등급과 필요 조치사항(필요 개인보호구 등)을 정하여 전산에 등록하고, 현장은 이에 따라 시험종목별 안전등급과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구본부는 소속 직원들에 대해 업무용 차량 사고대응 매뉴얼 교육 및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위하여 공용차량 안전물품을 구매하였다. 추가적으로, 현장은 외부 출장업무 수행 전 내부 전산망(ERP 등)을 통하여, 안전 및 차량운행에 대한 ‘안전수칙확인서’를 근로자가 확인하여야 부서장의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외부 출장업무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작업허가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이행 점검 강화
2. 작업 중 안전보건조치 준수여부 점검 절차 명문화

2. 시설물 안전관리

【1】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보수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별)의 수립〉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2025년 2월 15일 이전에 시설물안전법 대상 소관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별) 내 안전점검 법정 기한 준수〉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소관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의 법정 기한을 준수하여 수립하였다.

〈시설물관리계획(총괄) 수립의 적정성〉

기관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 긴급상황 조치체계 및 유지관리계획 작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의 조직·인사 운영과 목표 설정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이 지속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기관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재설계와 보유 자원 최적화,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수행조직을 개편하여 ESG안전센터와 자산관리부로 기능을 분리하였다. 자산관리부는 공단 시설 공사 및 본부 청사 등 소관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점검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ESG안전센터는 공단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수행조직의 구성과 업무 분장은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능과 안전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조직 구성은 시설물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인사규정 운영〉

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조직 구성원의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보직연한, 자격요건, 인센티브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목표 설정〉

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내에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의식 함양으로 원천적 사고예방’을 목표로 설정하여,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험성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시설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며, 추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직전년도 성과지표 점검 결과 및 환류사항을 목표 설정 내 반영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법정 기한 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설물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을 보고하여 법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성능평가 실시〉

해당없음

〈안전취약(D·E등급) 및 “중대한결함” 발생 시설물 적정관리〉

기관은 2025년 기준 시설물안전법 대상 소관 시설물의 안전취약(D·E등급) 및 “중대한결함” 발생 시설물 없이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서 안전취약(D·E등급) 및 “중대한결함”이 발생한 경우, 긴급 안전조치 및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제24조에 따라 법정 기한 내 보수·보강을 착수 및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4】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뉴얼·설계도서와 같은 유지관리 기초자료 확보, 정보시스템 운영, 사고 발생 대응 및 검증체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매뉴얼 보유〉

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보건활동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 총 12개의 지침서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비상시 대비·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 활동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 지침」을 통해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규정하여 현장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매뉴얼 및 지침서는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제도의 현행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 다만,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프로세스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점검·진단 실시, 결과 보고 및 중대결함 발생 시 조치 절차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함으로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제출하였다.

〈시설물 정보 시스템 운영〉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FMS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시설물관리계획, 점검·진단결과 제출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시스템 사용자 대상 활용 교육 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추천한다.

〈시설물 사고 발생 대응체계 구축·운영 및 모의훈련 실시〉

기관은 시설물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대비 및 대응지침을 수립하고 재난·재해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비상시 업무처리 절차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였다. 지침을 통해 비상시 조직구성, 임무분장 및 보고체계를 명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화재예방교육, 재난대비 소방훈련, 지진대피훈련 및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다만, 제출자료를 통해 지진대피훈련의 실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체계적인 훈련 운영을 위한 훈련계획 수립 여부 또한 명확하지 않다. 소방훈련의 경우 훈련 실시 후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모의훈련 개선·환류 활동이 일부 확인되나, 타 훈련에 대해서는 개선·환류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훈련계획 수립 단계에서 과거 훈련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모든 훈련에 대해 실시 후 분석 및 개선을 체계화함으로써 모의훈련의 내실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운영〉

기관은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 중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활용한 상·하반기 각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FMS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실시간 검증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및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는 체계는 확인되지 않아 점검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보수·보강 방안의 타당성 검토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산정되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와 보수·보강 방안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 대상, 위원회 구성, 검증 항목 및 실시 시기 등을 명확히 설정한 검증체계를 규정화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중점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해당없음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
2. 모의훈련 개선점 파악을 통한 향후 계획 반영 필요
3.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검증체계 규정화

【5】시설물 사고 및 안전성능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후속조치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소관시설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국민 안전의 위협을 초래하는 시설물 사고 발생 및 대응〉

2025년 한 해 동안 시설물 손상 및 장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또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과 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소관 시설물 안전등급〉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소관 시설물의 안전등급 수준을 양호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내구연한 동안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시설물 노후화 대비〉

기관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산 국가자격발간센터 및 대구지역본부 청사 리모델링 등 주요 거점 시설에 대한 대규모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보수 실적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직접적으로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현재의 사업 방식은 특정 시점의 노후도에 대응하는 일회성 성격이 강하므로 향후 자산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노후화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시설물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구체적인 유지관리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연차별 재원 조달 방안을 도출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수립된 계획이 실제 집행과 일치하는지 이행 적정성을 상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선순환 환류(Feedback)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할 것을 권고한다.

〈보수·보강 이력 관리〉

기관은 1994년 사용승인 이후 노후화가 진행 중인 3종 건축물 및 공공업무시설을 소관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도에 따른 정기적인 보수·보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추적하는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입력된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관리 주체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보강 이력관리 대상, 기준, 방법, 기한 및 미적정 관리 시 조치 사항 등을 명문화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최우선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보수·보강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체계 구축 및 운영〉

해당없음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기관의 소관 시설물별 노후화 기준 마련
2. 보수·보강 이력관리의 구체적인 규정(이력관리 대상 용역, 기준, 방법, 주체, 기한, 이행점검 및 미적정 관리에 대한 조치 등) 마련
3. 시설물 보수·보강 이력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7】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담 인력의 전문자격 확보 및 전문교육 이수, 전문기술 적용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조직 구성원 전문성 강화〉

기관은 임직원과 고객의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2025년 안전·보건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안전법의 이해, 위험성평가 사전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또한 안전·보건 담당자 직무교육 내에 시설물 안전 관리방법 등의 교육과정은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높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또한 자격취득 지원, 외부 전문교육 지원,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참여 등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육 운영 이후 만족도 조사 등 체계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구축할 것을 추천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

기관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위험구역 내 지능형 CCTV를 설치하였다. 또한 위험작업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계실, 전기실에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문고객 및 임직원들의 안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후에는 전문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유효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한 뒤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환류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기술 도입 및 개선 노력을 추천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개선 필요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과정 및 제도개선 노력 필요
2. 전문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 필요

【8】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주요 라이프 라인의 기능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시설물 회복 및 복원 소요기간 감축〉

해당없음

〈시설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

기관은 시험장 내 안전상 문제 및 이용자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감전·화재·기계 사고·누수 등 다양한 사고 유형을 포괄적으로 식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해 배터리 교체, 냉방기·온수기·오븐 제어기 교체, 화재감지기 설치, 방수 조치, 보안시스템 현행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제시하고 이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출된 근거자료의 대부분이 실시계획(안) 및 실시(안) 통보 공문에 국한되어 있어 해당 과제가 실제로 이행되어 구체적으로 개선된 내용이나 성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해 즉각적인 예방·대응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위험요소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반복 발생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점검·환류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BF(Barrier-Free) 인증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위험요소 발굴 노력을 권고한다.

3 「안전성과」 범주 심사

【1】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개선 이행 심사〉

해당사항 없음

〈개선 이행 노력〉

해당사항 없음

[2]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경영책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심사의견

〈안전활동 추진 실적의 적정성〉

기관의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No.1 안전지킴이’의 비전과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의식 함양으로 원천적 사고 예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안전보건경영체계,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의 4대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13개 추진과제는 추진방침, 추진일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관의 산하 소속기관에서는 안전경영책임계획에 기반하여 세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국가자격시험 안전관리대책 추진’,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 안전계획수립’, ‘HBDK 행정정보시스템 재난대응본부(TF) 구축운영’ 등이 그 예이다.

13개 추진과제는 안전경영지원국 안전보건부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기관에서는 중대재해 0명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1건, 담벼락 붕괴 등 일반사고 4건이 발생하였다. 또 년 약 450만명의 수험생 중 손베임, 화상 등 경미사건이 41건 발생하였다.

기관은 안전보건체계 고도화에도 노력하였다.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안전업무 인력을 확대하고 조직 편제를 조정하였고,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수행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지침서(12종) 개정, ISO 45001 사후심사 등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고도화에 힘썼다.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기관은 안전전담부서를 임원 직속의 ESG안전센터로 격상(26.1.1.)하였으며, 안전인력을 2명 증원하여 안전전담조직인력을 보강하였고, 규정 개정으로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명확화하였다. 소속기관별 평가에서 안전활동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평가지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외에도, 직원 보건활동 확대, 도급사업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전사 안전캠페인 확대, 위험요인 355건 발굴, 아차사고예방 464건 발굴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활동 내부평가(KPI)시 계량지표 가중치를 1.8점에서 4.8점으로 확대하여 안전 관련 평가지표의 실효성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안전경영책임 활동에 대한 자체심사(Audit) 실시〉

기관은 2025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있는 13개 추진과제 및 ‘제3종 시설물 등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이행점검’, ‘직원 출장 시 사전 안전교육 강화’ 등 총 15개 과제의 안전성과를 측정하고,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파악하여 이행조치를 실행하였다. 다만, 자체심사는 ESG안전센터에서 자체평가로 실시되었고, 특히 명확한 절차나 실행방법을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자체심사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실적에 대한 주무부처 점검 및 후속조치 계획수립 여부〉

안전경영책임계획과 이행 실적(2025년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통하여 보고하였다.

[3]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대국민,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이 종사자를 위해 추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기관의 경영진은 도급사업 공사 담당자 면담 및 공사 현장 안전점검 실시로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였다. 전사적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중량물 포스터를 부착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외에도 안전게임, 안전보건 메시지 문구 작성, 안전 보건 모의고사, 안전다짐 한마디, 안전연극 개최 등 격월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휴게공간(슬기책방) 신설, 축구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정비 및 개방 등 기관 종사자들의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였다.

〈기관이 대국민(종사자 제외)을 위해 추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안전진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작업형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전 종목(292개)을 안전등급 설정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정밀화학기사 등 106종목은 위험도가 높은 4등급으로 분류되었다. 향후 등급체계에 따라 안전보호구 지정, 안전 관련 실격사항(배점 강화, 응시제한) 추가 등 안전요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기술자격 작업형 실기시험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평가 고도화에 노력하였다. 입국 전 취업교육 강화 및 안전평가 제도화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을 유도하고,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지식·한국어 능력을 검증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결핵이중판독시스템 강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전물품 지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호에도 노력하였다.

기관은 관세청, 질병관리청, 법무부,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안전·상담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다. EPS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제적 안전환경 조성은 선제적 유해·위험요인 제거가 가능하여 외국인고용 사업장 내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안전문화 확산 활동 노력(①과②)에 따른 성과〉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 활동 노력의 결과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 증대(18개→73개) 등 안전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산업재해 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사 안전의식을 4개 영역(①안전가치, ②안전운영, ③안전교육, ④안전소통)으로 진단한 결과 전년도(3.76점) 대비 0.22점 상승하였다.

작업형 실기시험의 「안전진심 프로젝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국가자격시험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2025년 자체 응급조치 사례 총 19건)가 기대된다. 기관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작업형 실기시험 안전사고 30% 이상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4】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의 사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사고사망 예방 실적〉

기관은 2025년 산업재해통계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없었다.

〈사고사망 감소 성과〉

기관의 사고사망 승인은 심사 대상연도 직전 3년('22년~'24년) 평균 0명에서, '25년 0명으로 동일하였다.

〈사고사망 대응 노력도〉

해당사항 없음